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7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박상혁 · 김남근 · 정일영

최기상 · 임호선 · 김현정

김병기 · 김선민 · 한민수

이연희 · 김남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 중 "한다"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401조제1항 중 "제3자"를 "제3자(주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2조의4(합병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그 합병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이전에하여야 한다.

제5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2조의 5(합병검사인)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2조의6(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는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 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 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제530조의11제1항 본문 중 "제526조"를 "제522조의4부터 제522조의6까지, 제52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 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 여야 한다. 第401條(第3者에 對한 責任) ① 第401條(第3者에 對한 責任)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 -----제3자(주주를 포함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22조의4(합병유지청구권)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 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 로 합병을 추진하여 주주가 불 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그 합병 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신 설>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 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이전 에 하여야 한다.

제522조의5(합병검사인) 회사 또 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6(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 멸하는 회사의 이사는 합병비 율을 결정할 때 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第530條의11(準用規定) ① 분할 | 第530條의11(準用規定) ① ------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 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u>제526조</u>,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 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 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 다.

제522조의4부터 제
522조의6까지, 제526조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